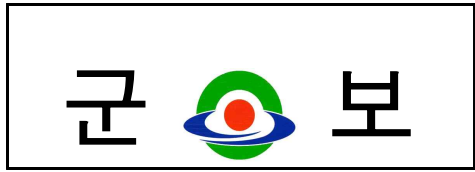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00호 2024. 1.18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공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5호)
- 농업기반정비사업[개간] 준공 승인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7호)

공 고

-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4-174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고 시

예천군 고시 제 2024 - 5호

공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

공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
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
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01. 18.

예 천 군



1. 사업의 명칭 : 공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2. 사업의 목적

- 공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주택 정비, 안전·위생 확보, 기초생활인프라,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

3. 위 치 : 예천군 풍양면 공덕1리 일원

4. 사 업 비 : 2,444.4백만원(국비 1,713, 지방비 577, 자부담 154.4)

5. 주요 사업내용

- 노후주택 정비 :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, 빈집 철거, 노후 집수리
- 기초생활인프라 : 마을 안길 정비, 위험 축대 정비, 재래식화장실 개량,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설치, 주민 쉼터 정비
- 주민공동시설 : 마을회관 리모델링
- 경관시설 정비 : 노후 담장 정비
-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

6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
7. 사업시행기간 : 2023년 ~ 2026년(4년간)

농업기반정비사업(개간) 준공 승인 고시

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영 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사업 준공
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18일

예 천 군



- ①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② 사업효과 :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.

승 인 조 서

사업명	위 치				승인 면적 (㎡)	사업기간 (시행계획 승인)	총소요 사업비 (천원)	사업시행자
	시군	읍면	리동	지번				
농업기반 정비사업 (개간)	예천	감천	현내	산9-2	4,950	2020.11.06.~ 2023.12.31.	111,400	박 강 *

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8일

예 천 군



1. 조례명 :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예천군 투자유치협의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지원 및 성장을 도모하고, 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투자유치협의회 비상설화(안 제3조)

-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
- 위원 구성 대상 추가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haru1210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지역경제과

3) 팩스 : 054-650-609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(전화: 054-650-685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성하며”를 “구성하고”로, “위원 중에서 호선하며”를 “투자유치 담당 과장으로 하며”로,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 팀장이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예천군의회 의원

3. 지역 경제인

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투자유치협의회 구성 등)	제3조(투자유치협의회 구성 등)
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투자유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둘 수 있다.</u>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 ----- ----- <u>구성하고</u> ----- -- <u>투자유치 담당 과장으로 하며</u> ----- ----- ----- <u>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</u>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2. <u>예천군의회 의원</u>
<신설>	3. <u>지역 경제인</u>
2. (생략)	4. (현행 제2호와 같음)
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1년 미만	<삭제>

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협의회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<신설>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담당 팀장이 -----.

⑥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